1.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법규준수 유도를 위해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정비하며, 원산지 등 사전심사 수수료 납부대상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수출입통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품목번호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주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안 제8조)

호주 정부가 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추가되었음을 통보해옴에 따라 이를 반영함.

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단축대상 정비(안 제18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단축대상으로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있는 자를 추가함.

다. 원산지 등 사전심사 수수료 합리화(안 제31조)

원산지 등 사전심사 수수료 납부 대상을 현행 모든 신청 물품에서 사전심사를 위하여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으로 합리화함.

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품목번호 현행화(안 별표 4 및 별표 1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품목번호를 현행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3.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WiseTech Global Pty Ltd

제18조제6항 단서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있는 자

제31조제3항 중 “신청 물품당”을 “사전심사를 위하여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당”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의 개정규정: 2026년 5월 1일
2. 별표 14의 개정규정: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에 따라 해당 협정 부속서 3-가가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제2조(신규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신규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전심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4조제4호 관련)

법 제7조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영해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
6)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서 등록되고,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물품
7) 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연안국의 어업자원 채취권을 포함한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그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11)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4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2) 1)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때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3) 1) 및 제3호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서 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6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그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나)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가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다) 세탁・세척 작업 또는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라)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마)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바)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사)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아)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자)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차)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카)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타)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파)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하) 물품이나 물품의 포장에 상표·의장·라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거) 가)부터 하)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1)나)·라)·카) 및 타)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차)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은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의 총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집적법

$$\text{역내부가가치 비율} = \frac{\text{원산지재료의 가격}}{\text{물품의 본선인도가격}} \times 100$$

나) 공제법

$$\text{역내부가가치 비율} = \frac{\text{물품의 본선인도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text{물품의 본선인도가격}} \times 100$$

다) 가)의 산식에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 운임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말하며, 나)의 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국제적 운송과 관련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항 도착까지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수입항 도착까지의 비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생산이 개시된 체약당사국에서 해당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가격으로서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2)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1)가)에 따른 집적법 또는 1)나)에 따른 공제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에 동일한 역내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 금형, 다이스(Dies) 및 기기(器機)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4)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 그리스(Grease), 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5)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6)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7)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최종적인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재료

마.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바.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을 것

사.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물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설명서 또는 그 밖의 안내서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설명서 또는 그 밖의 안내서가 그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수입당사국에 의하여 그 물품과 함께 관세가 징수되어야 한다.

아. 포장 및 포장재료의 원산지결정

1)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포장 및 포장재료(해당 물품과 함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가격을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고려한다.

나) 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포장 및 포장재료(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 재료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는다.

2)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자. 전시용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원산지물품이 전시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송부되었다가 전시 중 또는 전시 후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입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정관세 대우를 부여한다.

가) 수출자가 그 물품을 수출당사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되는 국가로 송부하여 전시할 것

나) 수출자가 수입당사국의 화주에게 그 물품을 판매 또는 인도할 것

다) 그 물품이 전시 기간 동안 또는 전시 직후에 당초 전시를 위하여 송부된 상태대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될 것

2) 1)에 따른 전시는 상점 또는 사업장에서 외국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무역·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및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전시를 말하며, 전시 기간 동안 세관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3) 1)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물품이 전시된 전시회의 명칭과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2) 관련]

품목번호 (HS2022)	원산지 인정요건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1부의 주석>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란(魚卵), 자어(仔魚), 치어(稚魚), 실뱀장어, 굴 치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서 로티퍼(rotifer) 또는 알테미아(artemia)와 같은 초기사료로 통상의 방법으로 양식한 수산물은 그 양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제1류	체약당사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당사국"이라 한다)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제2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0301 0302 0303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4.31 0304.32 0304.33 0304.39 0304.41 0304.42 0304.43 0304.44 0304.45 0304.46 0304.47 0304.48 0304.49 0304.51 0304.52 0304.53 0304.54 0304.55 0304.56 0304.57 0304.5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4.61 0304.62 0304.63 0304.69 0304.71 0304.7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4.73 0304.74 0304.75 0304.79 0304.81 0304.82 0304.83 0304.84 0304.85 0304.86 0304.87 0304.88 0304.89 0304.91 0304.92 0304.93 0304.94 0304.95 0304.96 0304.97 0304.99	
0305.2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5.31 0305.32 0305.39 0305.41 0305.4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5.43 0305.44 0305.4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5.5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5.52 0305.53 0305.54 0305.59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305.61 0305.62 0305.63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5.64 0305.69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305.71 0305.72 0305.7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12 0306.1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1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16 0306.17 0306.1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3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3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33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34 0306.35 0306.36 0306.3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9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9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93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94 0306.95 0306.9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11 0307.12 0307.19 0307.21 0307.22 0307.2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31 0307.32 0307.39 0307.4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43 0307.4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5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52 0307.5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60 0307.7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72 0307.7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81 0307.8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83 0307.8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87 0307.88	
0307.9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92 0307.9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8.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8.12 0308.1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8.2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8.22 0308.29 0308.30 0308.9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9.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9.9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01.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401.2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401.40 0401.5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4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4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우유성분 중 체약당사국 이외의 것이 우유성분 총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4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404.9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40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406.10 0406.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40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우유성분 중 체약당사국 외의 것이 우유성분 총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406.40 0406.9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407 0408 0409 04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5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2부의 주석>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씨앗·인경(鱗莖)·근경(根莖)·삽수(揷穗)·접수(接穗) 또는 그 밖에 살아있는 식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그 성장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제6류 살아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제6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제7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0801.11 0801.12 0801.19 0801.21 0801.2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01.31 0801.3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0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0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04.10 0804.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04.30 0804.40 0804.5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13.10 0813.20 0813.30 0813.4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13.5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14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9류 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0901.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901.12 0901.21 0901.2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901.9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902 0903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904.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904.1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904.21 0904.2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90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906.11 0906.1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906.2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907 0908 090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910.11 0910.12 0910.20 0910.3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910.91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910.99	1. 타임 및 월계수 잎: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기타: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10류 곡물	

제10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1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102.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1102.90	1. 쌀가루 및 호밀가루: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103.11 1103.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103.19 1103.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104.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104.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104.22 1104.23 1104.29 1104.3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11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105.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1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10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107.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11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10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2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1302.11 1302.1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1302.13 1302.14 1302.19 1302.20	
1302.31	7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302.32 1302.3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14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3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제15류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1515.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2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51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1517.9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51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	

진 것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또는 곤충의 조제품	
1601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602.20 160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602.32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602.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602.41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602.42 1602.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602.5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60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60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604.12 1604.13 1604.15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604.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604.17 1604.18 1604.19 1604.20 1604.31 1604.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605.10 1605.21	3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605.29	
1605.30 1605.40 1605.51 1605.52 1605.53 1605.54 1605.55 1605.56 1605.57 1605.58 1605.59 1605.61 1605.62 1605.63 1605.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19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1901.90	1.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1904.90	1.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낟알상의 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905.31 1905.32 19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2005.91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005.99	1. 김치: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006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008.11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008.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1호, 제0802.42호, 제0802.91호, 제0802.92호 및 제0802.9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1호, 제0802.42호, 제0802.91호, 제0802.92호 및 제0802.9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00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008.93 2008.9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008.99	1. 조제한 식용 해초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2.21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009.41 2009.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2009.81 2009.89 200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21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902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902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103.90	1. 제2103.90.1030호의 고추장, 제2103.90.9030호의 혼합조미료, 제2103.90.9090호의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106.9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22류 음료·주류·식초	
2202.1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202.91 2202.99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2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204.21 2204.22 2204.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208.20 2208.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208.7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23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306.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3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309.90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240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24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4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40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4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404.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82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404.19	1. 제조한 담배 대용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4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82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404.91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404.9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82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9류 유기화학품	
2921.21 2921.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92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922.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22.19호의 트리에탄올아민의 염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922.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923.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23.40호 및 제2923.9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923.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23.30호 및 제2923.9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92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923.30호 및 제2923.4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30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330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011.10 4011.20 401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3.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11부의 주석>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만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단순 결합, 라벨링(labelling), 다림질 또는 프레싱(pressing),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포장 작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나. 직접 상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재단, 감침질(hemming), 스티칭(stitching), 오버로킹(overlocking)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다. 트리밍(trimming), 의류 액세서리의 결합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라. 표백, 방수가공, 디케이팅(decating), 방축가공(shrinking), 머서라이징(mercerizing) 및 이와 유사한 마무리공정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마. 자수한 물품의 총면적 또는 총중량의 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자수공정

제50류 견	
5001 5002 50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50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4호부터 제50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50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3.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102 5103 5104 5105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51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5111 5112 51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3.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52류 면	
5201 5202 52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52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301 5302 5303 53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5309 53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5311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3.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401 5402 5403 5404 5405 54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5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508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제5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801 5802 5803 5804 5805 5806 5807 5808 58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제5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제6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6201 6202 62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

6204 6205 6206 6207 6208 6209 6210 6211 6212	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6213 62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6215 6216 62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6301 6302 6303 6304 63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

6306 6307 6308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6309 63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2.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6811.40	1. 그 밖의 시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6811.8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69류 도자제품	
69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유약처리되지 않은(unglazed) 물품을 유약처리한(glazed) 것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7102 7103 71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71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7113.11 7113.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7114.11 711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711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71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7117.11 7117.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72류 철강	
7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220.11 7220.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7408 74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76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10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15.10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479.71 8479.79 8479.81 8479.83 8479.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48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485.10 8485.30 8485.8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486.10 8486.20 8486.30 8486.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04.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08.19	1. 가정용 진공청소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08.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17.13 8517.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17.61 8517.62	1.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송신기기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17.71 8517.7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18.30 8518.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19.30	1. 레코드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턴 테이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2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23.5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25.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28.71	1. 텔레비전 천연색 수신용 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28.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2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32.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3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39.21 8539.31 8539.51 8539.52 853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0.40	1.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0.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0.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0.79	1. 속도변조관(klystron):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0.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40.91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1.51 8541.59 854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제8542호의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가 아닌 물품에서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로 변경된 것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3.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3.70	1.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electric fence energiser)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02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03.21 8703.22 8703.23 8703.24 8703.31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03.32 8703.33 8703.40 8703.50 8703.60 8703.70 8703.80 8703.90	
8704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08.40	1. 기어박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부분품: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08.50	1.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및 비구동 차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부분품: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08.80	1. 서스펜션 시스템(쇼크업소버 포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부분품: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08.91	1. 방열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부분품: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08.92	1.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부분품: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08.94 8708.95 8708.99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11	4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20부 잡품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3.30 9403.40 9403.50 9403.60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26년 5월 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다목 관련)

가. 브루나이 다루살람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4016.99		4016.99		4016.99
2	4202.11		4202.11		4202.11
3	4202.12		4202.12		4202.12
4	4202.19		4202.19		4202.19
5	4202.21		4202.21		4202.21
6	4202.22		4202.22		4202.22
7	4202.91		4202.91		4202.91
8	4202.92		4202.92		4202.92
9	4202.99		4202.99		4202.99
10	5811.00		5811.00		5811.00
11	6107.11		6107.11		6107.11
12	6107.12		6107.12		6107.12
13	6107.19		6107.19		6107.19
14	6107.91		6107.91		6107.91
15	6107.92		6107.99		6107.99
16	6107.99		6107.99		6107.99
17	6108.21		6108.21		6108.21

				*	9619.00
18	6108.22		6108.22		6108.22
				*	9619.00
19	6108.29		6108.29		6108.29
				*	9619.00
20	6108.91		6108.91		6108.91
21	6108.92		6108.92		6108.92
22	6108.99		6108.99		6108.99
23	6109.10		6109.10		6109.10
24	6111.20		6111.20		6111.20
				*	9619.00
25	6115.19	*	6115.10	*	6115.10
			6115.29		6115.29
26	6115.20	*	6115.10	*	6115.10
			6115.30		6115.30
27	6115.92	*	6115.10	*	6115.10
			6115.95		6115.95
28	6115.93	*	6115.10	*	6115.10
			6115.96		6115.96
29	6115.99	*	6115.10	*	6115.10
			6115.99		6115.99
30	6117.10		6117.10		6117.10
31	6117.20	*	6117.80	*	6117.80
32	6117.90		6117.90		6117.90
33	6201.11		6201.11		6201.11
34	6201.12		6201.12		6201.12
35	6201.13		6201.13		6201.13
36	6201.92		6201.92		6201.92

37	6201.93		6201.93		6201.93
38	6202.12		6202.12		6202.12
39	6202.13		6202.13		6202.13
40	6202.92		6202.92		6202.92
41	6202.93		6202.93		6202.93
42	6203.12		6203.12		6203.12
43	6203.19		6203.19		6203.19
44	6203.21	*	6203.29	*	6203.29
45	6203.31		6203.31		6203.31
46	6203.32		6203.32		6203.32
47	6203.33		6203.33		6203.33
48	6203.42		6203.42		6203.42
49	6203.43		6203.43		6203.43
50	6203.49		6203.49		6203.49
51	6204.11		6204.11		6204.11
52	6204.12		6204.12		6204.12
53	6204.13		6204.13		6204.13
54	6204.31		6204.31		6204.31
55	6204.32		6204.32		6204.32
56	6204.33		6204.33		6204.33
57	6204.39		6204.39		6204.39
58	6204.41		6204.41		6204.41
59	6204.42		6204.42		6204.42
60	6204.43		6204.43		6204.43
61	6204.44		6204.44		6204.44
62	6204.49		6204.49		6204.49
63	6204.51		6204.51		6204.51
64	6204.52		6204.52		6204.52

65	6204.53		6204.53		6204.53
66	6204.59		6204.59		6204.59
67	6204.61		6204.61		6204.61
68	6204.62		6204.62		6204.62
69	6204.63		6204.63		6204.63
70	6204.69		6204.69		6204.69
71	6205.10		6205.90		6205.90
72	6205.20		6205.20		6205.20
73	6205.30		6205.30		6205.30
74	6205.90		6205.90		6205.90
75	6206.10		6206.10		6206.10
76	6206.30		6206.30		6206.30
77	6206.40		6206.40		6206.40
78	6206.90		6206.90		6205.90
79	6207.21		6207.21		6207.21
80	6211.20		6211.20		6211.20
81	6211.41		6211.41	*	6211.49
82	6211.42		6211.42		6211.42
83	6211.43		6211.43		6211.43
84	6212.10		6212.10		6212.10
85	6212.20		6212.20		6212.20
86	6212.90		6212.90		6212.90
87	6213.10		6213.90		6213.90
88	6213.20		6213.20		6213.20
89	6213.90		6213.90		6213.90
90	6214.10		6214.10		6214.10
91	6214.20		6214.20		6214.20
92	6214.30		6214.30		6214.30

93	6214.90		6214.90		6214.90
94	6216.00		6216.00		6216.00
95	8424.90		8424.90		8424.90
		*	8486.90	*	8486.90
96	9113.20		9113.20		9113.20
97	9113.90		9113.90		9113.90
98	9502.10	*	9503.00	*	9503.00
99	9503.41				
100	9503.49				
나. 캄보디아왕국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2923.90		2923.90		2923.90
2	3907.10		3907.10		3907.10
3	3907.20		3907.20		3907.20
				*	3002.10
4	3908.10		3908.10		3908.10
5	3910.00		3910.00		3910.00
6	3923.10		3923.10		3923.10
7	3923.30		3923.30		3923.30
8	3923.50		3923.50		3923.50
9	3923.90		3923.90		3923.90
10	3926.90		3006.91		3006.91
			3926.90		3926.90
		*	8536.70	*	8536.70
11	6107.11		6107.11		6107.11

12	6107.12		6107.12		6107.12
13	6107.19		6107.19		6107.19
14	6107.91		6107.91		6107.91
15	6107.92		6107.99		6107.99
16	6107.99		6107.99		6107.99
17	6108.21		6108.21		6108.21
				*	9619.00
18	6108.22		6108.22		6108.22
				*	9619.00
19	6108.29		6108.29		6108.29
				*	9619.00
20	6108.91		6108.91		6108.91
21	6108.92		6108.92		6108.92
22	6108.99		6108.99		6108.99
23	6111.20		6111.20		6111.20
				*	9619.00
24	6114.20		6114.20		6114.20
25	6115.19	*	6115.10	*	6115.10
			6115.29		6115.29
26	6115.20	*	6115.10	*	6115.10
			6115.30		6115.30
27	6115.92	*	6115.10	*	6115.10
			6115.95		6115.95
28	6115.93	*	6115.10	*	6115.10
			6115.96		6115.96
29	6115.99	*	6115.10	*	6115.10
			6115.99		6115.99
30	6117.10		6117.10		6117.10

31	6117.20	*	6117.80	*	6117.80
32	6117.90		6117.90		6117.90
33	6201.11		6201.11		6201.11
34	6201.12		6201.12		6201.12
35	6201.13		6201.13		6201.13
36	6201.92		6201.92		6201.92
37	6201.93		6201.93		6201.93
38	6202.12		6202.12		6202.12
39	6202.13		6202.13		6202.13
40	6202.92		6202.92		6202.92
41	6202.93		6202.93		6202.93
42	6203.12		6203.12		6203.12
43	6203.19		6203.19		6203.19
44	6203.21	*	6203.29	*	6203.29
45	6203.31		6203.31		6203.31
46	6203.32		6203.32		6203.32
47	6203.33		6203.33		6203.33
48	6203.42		6203.42		6203.42
49	6203.43		6203.43		6203.43
50	6203.49		6203.49		6203.49
51	6204.11		6204.11		6204.11
52	6204.12		6204.12		6204.12
53	6204.13		6204.13		6204.13
54	6204.31		6204.31		6204.31
55	6204.32		6204.32		6204.32
56	6204.33		6204.33		6204.33
57	6204.39		6204.39		6204.39
58	6204.41		6204.41		6204.41

59	6204.42		6204.42		6204.42
60	6204.43		6204.43		6204.43
61	6204.44		6204.44		6204.44
62	6204.49		6204.49		6204.49
63	6204.51		6204.51		6204.51
64	6207.21		6207.21		6207.21
65	6212.10		6212.10		6212.10
66	6212.20		6212.20		6212.20
67	6212.90		6212.90		6212.90
68	6213.10	*	6213.90	*	6213.90
69	6213.20		6213.20		6213.20
70	6401.10		6401.10		6401.10
71	6401.91		6401.99		6401.99
72	6401.92		6401.92		6401.92
73	6401.99		6401.99		6401.99
74	6402.12		6402.12		6402.12
75	6402.19		6402.19		6402.19
76	6402.20		6402.20		6402.20
77	6402.30		6402.91		6402.91
			6402.99		6402.99
78	6402.91		6402.91		6402.91
79	6402.99		6402.99		6402.99
80	6403.12		6403.12		6403.12
81	6403.19		6403.19		6403.19
82	6403.20		6403.20		6403.20
83	6403.30		6403.91		6403.91
			6403.99		6403.99
84	6403.40		6403.40		6403.40

85	6403.51		6403.51		6403.51
86	6403.59		6403.59		6403.59
87	6403.91		6403.91		6403.91
88	6403.99		6403.99		6403.99
89	6404.11		6404.11		6404.11
90	6404.19		6404.19		6404.19
91	6404.20		6404.20		6404.20
92	6405.10		6405.10		6405.10
93	6405.20		6405.20		6405.20
94	6405.90		6405.90		6405.90
95	6406.10		6406.10		6406.10
96	6406.20		6406.20		6406.20
97	6406.91		6406.91	*	6406.90
98	6406.99		6406.99	*	6406.90
99	7015.10		7015.10		7015.10
100	8413.30		8413.30		8413.30
다. 인도네시아공화국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2923.90		2923.90		2923.90
2	3907.10		3907.10		3907.10
3	3907.20		3907.20		3907.20
				*	3002.10
4	3908.10		3908.10		3908.10
5	3910.00		3910.00		3910.00
6	4016.99		4016.99		4016.99

7	4202.11		4202.11		4202.11
8	4202.12		4202.12		4202.12
9	4202.19		4202.19		4202.19
10	4202.21		4202.21		4202.21
11	4202.22		4202.22		4202.22
12	4202.29		4202.29		4202.29
13	4202.91		4202.91		4202.91
14	4202.92		4202.92		4202.92
15	4202.99		4202.99		4202.99
16	4203.10		4203.10		4203.10
17	4203.21		4203.21		4203.21
18	5810.91		5810.91		5810.91
19	5810.92		5810.92		5810.92
20	5811.00		5811.00		5811.00
21	6302.31		6302.31		6302.31
22	6302.32		6302.32		6302.32
23	6302.51		6302.51		6302.51
24	6302.53		6302.53		6302.53
25	6302.60		6302.60		6302.60
26	6302.91		6302.91		6302.91
27	6302.93		6302.93		6302.93
28	6303.91		6303.91		6303.91
29	6303.92		6303.92		6303.92
30	6304.19		6304.19		6304.19
31	6304.92		6304.92		6304.92
32	7015.10		7015.10		7015.10
33	7116.20		7116.20		7116.20
34	7117.11		7117.11		7117.11

35	7419.99	*	7419.99	*	7419.99
		*	8536.70	*	8536.70
36	8207.30		8207.30		8207.30
37	8215.91		8215.91		8215.91
38	8215.99		8215.99		8215.99
39	8413.30		8413.30		8413.30
40	8421.21		8421.21		8421.21
41	8421.22		8421.22		8421.22
42	8421.23		8421.23		8421.23
43	8421.29		8421.29		8421.29
44	8421.31		8421.31		8421.31
45	8424.90		8424.90		8424.90
		*	8486.90	*	8486.90
46	8473.10		8473.10		8473.10
47	8480.71		8480.71		8480.71
		*	8486.40	*	8486.40
48	8504.31		8504.31		8504.31
49	8504.40		8504.40		8504.40
50	8504.90		8504.90		8504.90
51	8512.20		8512.20		8512.20
52	8512.90		8512.90		8512.90
53	8516.80		8516.80		8516.80
54	8517.90	*	8517.70	*	8517.70
		*	8443.99	*	8443.99
55	8529.90	*	8517.70	*	8517.70
			8529.90		8529.90
56	8534.00		8534.00		8534.00
57	8536.30		8536.30		8536.30

58	8536.50		8536.50		8536.50
59	8536.69		8536.69		8536.69
60	8536.90		8536.90		8536.90
61	8538.90		8538.90		8538.90
62	8539.29		8539.29		8539.29
63	8539.39		8539.39		8539.39
64	8540.91		8540.91		8540.91
65	8543.89	*	8486.10	*	8486.10
		*	8486.20	*	8486.20
		*	8486.30	*	8486.30
		*	8486.40	*	8486.40
		*	8523.52	*	8523.52
		*	8543.70	*	8543.70
66	8544.41	*	8544.42	*	8544.42
67	8544.70		8544.70		8544.70
68	8714.99		8714.99		8714.99
69	9013.80		9013.80		9013.80
70	9101.11		9101.11		9101.11
71	9101.12		9101.19		9101.19
72	9101.19		9101.19		9101.19
73	9101.21		9101.21		9101.21
74	9101.29		9101.29		9101.29
75	9101.91		9101.91		9101.91
76	9101.99		9101.99		9101.99
77	9102.11		9102.11		9102.11
78	9102.12		9102.12		9102.12
79	9102.19		9102.19		9102.19
80	9102.21		9102.21		9102.21

81	9102.29		9102.29		9102.29
82	9102.91		9102.91		9102.91
83	9102.99		9102.99		9102.99
84	9111.10		9111.10		9111.10
85	9111.20		9111.20		9111.20
86	9111.80		9111.80		9111.80
87	9111.90		9111.90		9111.90
88	9112.20		9112.20		9112.20
89	9112.90		9112.90		9112.90
90	9113.10		9113.10		9113.10
91	9113.20		9113.20		9113.20
92	9113.90		9113.90		9113.90
93	9114.10		9114.10		9114.10
94	9114.20		9114.20	*	9114.90
95	9114.30		9114.30		9114.30
96	9114.40		9114.40		9114.40
97	9114.90		9114.90		9114.90
98	9404.90		9404.90		9404.90
99	9502.91	*	9503.00	*	9503.00
100	9503.49				
라.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2923.90		2923.90		2923.90
2	3907.10		3907.10		3907.10
3	3907.20		3907.20		3907.20

				*	3002.10
4	3908.10		3908.10		3908.10
5	3910.00		3910.00		3910.00
6	4016.99		4016.99		4016.99
7	4202.11		4202.11		4202.11
8	4202.12		4202.12		4202.12
9	4202.19		4202.19		4202.19
10	4202.21		4202.21		4202.21
11	4202.22		4202.22		4202.22
12	4202.29		4202.29		4202.29
13	4202.91		4202.91		4202.91
14	4202.92		4202.92		4202.92
15	4202.99		4202.99		4202.99
16	4203.10		4203.10		4203.10
17	4203.21		4203.21		4203.21
18	6115.19	*	6115.10	*	6115.10
			6115.29		6115.29
19	6115.20	*	6115.10	*	6115.10
			6115.30		6115.30
20	6115.92	*	6115.10	*	6115.10
			6115.95		6115.95
21	6115.93	*	6115.10	*	6115.10
			6115.96		6115.96
22	6115.99	*	6115.10	*	6115.10
			6115.99		6115.99
23	6211.20		6211.20		6211.20
24	6402.12		6402.12		6402.12
25	6403.12		6403.12		6403.12

26	7015.10		7015.10		7015.10
27	7113.11		7113.11		7113.11
28	7113.19		7113.19		7113.19
29	7113.20		7113.20		7113.20
30	7116.10		7116.10		7116.10
31	7116.20		7116.20		7116.20
32	7117.11		7117.11		7117.11
33	7117.19		7117.19		7117.19
34	7117.90		7117.90		7117.90
35	7315.20		7315.20		7315.20
36	7419.99	*	7419.99	*	7419.99
		*	8536.70	*	8536.70
37	8207.30		8207.30		8207.30
38	8215.91		8215.91		8215.91
39	8215.99		8215.99		8215.99
40	8302.30		8302.30		8302.30
41	8413.30		8413.30		8413.30
42	8421.21		8421.21		8421.21
43	8421.22		8421.22		8421.22
44	8421.23		8421.23		8421.23
45	8421.29		8421.29		8421.29
46	8421.31		8421.31		8421.31
47	8473.10		8473.10		8473.10
48	8480.71	*	8486.40	*	8486.40
			8480.71		8480.71
49	8504.31		8504.31		8504.31
50	8504.40		8504.40		8504.40
51	8504.90		8504.90		8504.90

52	8512.20		8512.20		8512.20
53	8512.90		8512.90		8512.90
54	8516.80		8516.80		8516.80
55	8534.00		8534.00		8534.00
56	8536.30		8536.30		8536.30
57	8536.50		8536.50		8536.50
58	8536.69		8536.69		8536.69
59	8536.90		8536.90		8536.90
60	8538.90		8538.90		8538.90
61	8539.29		8539.29		8539.29
62	8539.39		8539.39		8539.39
63	8540.91		8540.91		8540.91
64	8543.89	*	8486.10	*	8486.10
		*	8486.20	*	8486.20
		*	8486.30	*	8486.30
		*	8486.40	*	8486.40
		*	8523.52	*	8523.52
		*	8543.70	*	8543.70
65	8544.41	*	8544.42	*	8544.42
66	8544.70		8544.70		8544.70
67	9013.80		9013.80		9013.80
68	9101.11		9101.11		9101.11
69	9101.12		9101.19		9101.19
70	9101.19		9101.19		9101.19
71	9101.21		9101.21		9101.21
72	9101.29		9101.29		9101.29
73	9101.91		9101.91		9101.91
74	9101.99		9101.99		9101.99

75	9102.11		9102.11		9102.11
76	9102.12		9102.12		9102.12
77	9102.19		9102.19		9102.19
78	9102.21		9102.21		9102.21
79	9102.29		9102.29		9102.29
80	9102.91		9102.91		9102.91
81	9102.99		9102.99		9102.99
82	9111.10		9111.10		9111.10
83	9111.20		9111.20		9111.20
84	9111.80		9111.80		9111.80
85	9111.90		9111.90		9111.90
86	9112.20		9112.20		9112.20
87	9112.90		9112.90		9112.90
88	9113.10		9113.10		9113.10
89	9113.20		9113.20		9113.20
90	9113.90		9113.90		9113.90
91	9114.10		9114.10		9114.10
92	9114.20		9114.20	*	9114.90
93	9114.30		9114.30		9114.30
94	9114.40		9114.40		9114.40
95	9114.90		9114.90		9114.90
96	9502.10	*	9503.00	*	9503.00
97	9502.91				
98	9503.41				
99	9503.49				
100	9503.90				
마. 말레이시아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2923.90		2923.90		2923.90
2	3923.30		3923.30		3923.30
3	3926.90		3006.91		3006.91
			3926.90		3926.90
				*	9619.00
		*	8536.70	*	8536.70
4	4016.99		4016.99		4016.99
5	4202.11		4202.11		4202.11
6	4202.12		4202.12		4202.12
7	4202.21		4202.21		4202.21
8	4202.22		4202.22		4202.22
9	4202.29		4202.29		4202.29
10	4202.92		4202.92		4202.92
11	4203.21		4203.21		4203.21
12	5810.92		5810.92		5810.92
13	6108.99		6108.99		6108.99
14	6115.99	*	6115.10	*	6115.10
			6115.99		6115.99
15	6117.10		6117.10		6117.10
16	6117.20	*	6117.80	*	6117.80
17	6201.13		6201.13		6201.13
18	6201.92		6201.92		6201.92
19	6201.93		6201.93		6201.93
20	6202.12		6202.12		6202.12
21	6202.13		6202.13		6202.13
22	6202.92		6202.92		6202.92

23	6202.93		6202.93		6202.93
24	6203.19		6203.19		6203.19
25	6204.69		6204.69		6204.69
26	6205.90	*	6205.90	*	6205.90
27	6211.42		6211.42		6211.42
28	6211.43		6211.43		6211.43
29	6212.90		6212.90		6212.90
30	6213.10		6213.90		6213.90
31	6213.20		6213.20		6213.20
32	6213.90		6213.90		6213.90
33	6214.10		6214.10		6214.10
34	6214.20		6214.20		6214.20
35	6214.30		6214.30		6214.30
36	6214.90		6214.90		6214.90
37	6216.00		6216.00		6216.00
38	6303.92		6303.92		6303.92
39	6402.19		6402.19		6402.19
40	6402.20		6402.20		6402.20
41	6402.30	*	6402.91	*	6402.91
		*	6402.99	*	6402.99
42	6402.91		6402.91		6402.91
43	6403.19		6403.19		6403.19
44	6403.20		6403.20		6403.20
45	6403.30	*	6403.91	*	6403.91
		*	6403.99	*	6403.99
46	6403.51		6403.51		6403.51
47	6403.59		6403.59		6403.59
48	6403.91		6403.91		6403.91

49	6404.11		6404.11		6404.11
50	6405.10		6405.10		6405.10
51	6405.20		6405.20		6405.20
52	6405.90		6405.90		6405.90
53	6406.99		6406.99	*	6406.90
54	7015.10		7015.10		7015.10
55	7419.99	*	7419.99	*	7419.99
		*	8536.70	*	8536.70
56	8215.91		8215.91		8215.91
57	8302.30		8302.30		8302.30
58	8421.21		8421.21		8421.21
59	8424.90		8424.90		8424.90
		*	8486.90	*	8486.90
60	8473.10		8473.10		8473.10
61	8480.71		8480.71		8480.71
		*	8486.40	*	8486.40
62	8504.90		8504.90		8504.90
63	8512.20		8512.20		8512.20
64	8512.90		8512.90		8512.90
65	8517.90	*	8443.99	*	8443.99
		*	8517.70	*	8517.70
66	8529.90	*	8517.70	*	8517.70
		*	8529.90	*	8529.90
67	8534.00		8534.00		8534.00
68	8536.30		8536.30		8536.30
69	8536.50		8536.50		8536.50
70	8539.29		8539.29		8539.29
71	8539.39		8539.39		8539.39

72	8540.91		8540.91		8540.91
73	8543.89	*	8486.10	*	8486.10
		*	8486.20	*	8486.20
		*	8486.30	*	8486.30
		*	8486.40	*	8486.40
		*	8523.52	*	8523.52
		*	8543.70	*	8543.70
74	8544.41	*	8544.42	*	8544.42
75	8708.99	*	8708.40	*	8708.40
		*	8708.50	*	8708.50
		*	8708.80	*	8708.80
		*	8708.91	*	8708.91
		*	8708.92	*	8708.92
		*	8708.94	*	8708.94
			8708.95		8708.95
			8708.99		8708.99
76	8714.99		8714.99		8714.99
77	9013.80		9013.80		9013.80
78	9101.11		9101.11		9101.11
79	9101.12		9101.19		9101.19
80	9101.19		9101.19		9101.19
81	9101.21		9101.21		9101.21
82	9101.29		9101.29		9101.29
83	9101.91		9101.91		9101.91
84	9102.11		9102.11		9102.11
85	9102.12		9102.12		9102.12
86	9102.21		9102.21		9102.21
87	9102.91		9102.91		9102.91

88	9102.99		9102.99		9102.99
89	9111.10		9111.10		9111.10
90	9111.20		9111.20		9111.20
91	9111.80		9111.80		9111.80
92	9111.90		9111.90		9111.90
93	9112.90		9112.90		9112.90
94	9113.10		9113.10		9113.10
95	9113.20		9113.20		9113.20
96	9114.10		9114.10		9114.10
97	9114.20		9114.20	*	9114.90
98	9114.30		9114.30		9114.30
99	9114.40		9114.40		9114.40
100	9404.90		9404.90		9404.90
바. 미얀마연방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2923.90		2923.90		2923.90
2	3907.10		3907.10		3907.10
3	3907.20		3907.20		3907.20
				*	3002.10
4	3908.10		3908.10		3908.10
5	3910.00		3910.00		3910.00
6	3923.10		3923.10		3923.10
7	3923.30		3923.30		3923.30
8	3923.50		3923.50		3923.50
9	3923.90		3923.90		3923.90

10	3926.90		3006.91		3006.91
			3926.90		3926.90
				*	9619.00
		*	8536.70	*	8536.70
11	4202.12		4202.12		4202.12
12	4202.19		4202.19		4202.19
13	4202.21		4202.21		4202.21
14	4202.22		4202.22		4202.22
15	4202.29		4202.29		4202.29
16	4203.21		4203.21		4203.21
17	6211.20		6211.20		6211.20
18	6216.00		6216.00		6216.00
19	6401.10		6401.10		6401.10
20	6401.91		6401.99		6401.99
21	6401.92		6401.92		6401.92
22	6401.99		6401.99		6401.99
23	6402.12		6402.12		6402.12
24	6402.19		6402.19		6402.19
25	6402.20		6402.20		6402.20
26	6402.30		6402.91		6402.91
			6402.99		6402.99
27	6402.91		6402.91		6402.91
28	6402.99		6402.99		6402.99
29	6403.12		6403.12		6403.12
30	6403.20		6403.20		6403.20
31	6403.30		6403.91		6403.91
			6403.99		6403.99
32	6403.40	*	6403.40	*	6403.40

33	6403.51		6403.51		6403.51
34	6403.59		6403.59		6403.59
35	6403.91		6403.91		6403.91
36	6403.99		6403.99		6403.99
37	6404.20		6404.20		6404.20
38	6405.10		6405.10		6405.10
39	6405.20		6405.20		6405.20
40	6406.10		6406.10		6406.10
41	6406.20		6406.20		6406.20
42	6406.91		6406.91	*	6406.90
43	6914.90		6914.90		6914.90
44	7015.10		7015.10		7015.10
45	8207.30		8207.30		8207.30
46	8302.30		8302.30		8302.30
47	8413.30		8413.30		8413.30
48	8421.21		8421.21		8421.21
49	8421.22		8421.22		8421.22
50	8421.23		8421.23		8421.23
51	8421.29		8421.29		8421.29
52	8421.31		8421.31		8421.31
53	8424.90		8424.90		8424.90
		*	8486.90	*	8486.90
54	8473.10		8473.10		8473.10
55	8480.71		8480.71		8480.71
		*	8486.40	*	8486.40
56	8504.31		8504.31		8504.31
57	8504.40		8504.40		8504.40
58	8504.90		8504.90		8504.90

59	8512.20		8512.20		8512.20
60	8512.90		8512.90		8512.90
61	8516.80		8516.80		8516.80
62	8534.00		8534.00		8534.00
63	8536.30		8536.30		8536.30
64	8536.50		8536.50		8536.50
65	8536.69		8536.69		8536.69
66	8536.90		8536.90		8536.90
67	8538.90		8538.90		8538.90
68	8539.29		8539.29		8539.29
69	8539.39		8539.39		8539.39
70	8708.99	*	8708.40	*	8708.40
		*	8708.50	*	8708.50
		*	8708.80	*	8708.80
		*	8708.91	*	8708.91
		*	8708.92	*	8708.92
		*	8708.94	*	8708.94
			8708.95		8708.95
			8708.99		8708.99
71	8714.99		8714.99		8714.99
72	9013.80		9013.80		9013.80
73	9101.11		9101.11		9101.11
74	9101.12		9101.19		9101.19
75	9101.19		9101.19		9101.19
76	9101.21		9101.21		9101.21
77	9101.29		9101.29		9101.29
78	9101.91		9101.91		9101.91
79	9101.99		9101.99		9101.99

80	9102.11		9102.11		9102.11
81	9102.12		9102.12		9102.12
82	9102.19		9102.19		9102.19
83	9102.21		9102.21		9102.21
84	9102.29		9102.29		9102.29
85	9102.91		9102.91		9102.91
86	9102.99		9102.99		9102.99
87	9111.10		9111.10		9111.10
88	9111.20		9111.20		9111.20
89	9111.80		9111.80		9111.80
90	9111.90		9111.90		9111.90
91	9112.20		9112.20		9112.20
92	9112.90		9112.90		9112.90
93	9113.10		9113.10		9113.10
94	9113.20		9113.20		9113.20
95	9113.90		9113.90		9113.90
96	9114.10		9114.10		9114.10
97	9114.20		9114.20	*	9114.90
98	9114.30		9114.30		9114.30
99	9114.40		9114.40		9114.40
100	9114.90		9114.90		9114.90
사. 필리핀공화국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2923.90		2923.90		2923.90
2	4202.11		4202.11		4202.11

3	4203.10		4203.10		4203.10
4	6107.11		6107.11		6107.11
5	6107.12		6107.12		6107.12
6	6107.91		6107.91		6107.91
7	6107.92	*	6107.99	*	6107.99
8	6108.21		6108.21		6108.21
				*	9619.00
9	6108.22		6108.22		6108.22
				*	9619.00
10	6108.91		6108.91		6108.91
11	6108.92		6108.92		6108.92
12	6108.99		6108.99		6108.99
13	6111.20		6111.20		6111.20
				*	9619.00
14	6114.20		6114.20		6114.20
15	6117.10		6117.10		6117.10
16	6201.11		6201.11		6201.11
17	6201.12		6201.12		6201.12
18	6201.13		6201.13		6201.13
19	6201.92		6201.92		6201.92
20	6201.93		6201.93		6201.93
21	6202.12		6202.12		6202.12
22	6202.13		6202.13		6202.13
23	6202.92		6202.92		6202.92
24	6202.93		6202.93		6202.93
25	6203.12		6203.12		6203.12
26	6203.19		6203.19		6203.19
27	6203.31		6203.31		6203.31

28	6203.32		6203.32		6203.32
29	6203.33		6203.33		6203.33
30	6203.42		6203.42		6203.42
31	6203.43		6203.43		6203.43
32	6203.49		6203.49		6203.49
33	6204.11		6204.11		6204.11
34	6204.12		6204.12		6204.12
35	6204.13		6204.13		6204.13
36	6204.31		6204.31		6204.31
37	6204.32		6204.32		6204.32
38	6204.33		6204.33		6204.33
39	6204.39		6204.39		6204.39
40	6204.41		6204.41		6204.41
41	6204.42		6204.42		6204.42
42	6204.43		6204.43		6204.43
43	6204.44		6204.44		6204.44
44	6204.49		6204.49		6204.49
45	6204.51		6204.51		6204.51
46	6204.53		6204.53		6204.53
47	6204.59		6204.59		6204.59
48	6204.61		6204.61		6204.61
49	6204.62		6204.62		6204.62
50	6204.63		6204.63		6204.63
51	6204.69		6204.69		6204.69
52	6205.10		6205.90		6205.90
53	6205.30		6205.30		6205.30
54	6205.90		6205.90		6205.90
55	6206.10		6206.10		6206.10

56	6206.30		6206.30		6206.30
57	6206.90		6206.90		6206.90
58	6207.21		6207.21		6207.21
59	6211.20		6211.20		6211.20
60	6211.41		6211.41	*	6211.49
61	6211.42		6211.42		6211.42
62	6211.43		6211.43		6211.43
63	6212.20		6212.20		6212.20
64	6213.20		6213.20		6213.20
65	6214.10		6214.10		6214.10
66	6214.20		6214.20		6214.20
67	6214.30		6214.30		6214.30
68	6214.90		6214.90		6214.90
69	6302.31		6302.31		6302.31
70	6302.51		6302.51		6302.51
71	6302.53		6302.53		6302.53
72	6303.91		6303.91		6303.91
73	6304.92		6304.92		6304.92
74	6402.12		6402.12		6402.12
75	6403.12		6403.12		6403.12
76	6405.20		6405.20		6405.20
77	6406.91		6406.91	*	6406.90
78	7015.10		7015.10		7015.10
79	7113.11		7113.11		7113.11
80	7116.10		7116.10		7116.10
81	7116.20		7116.20		7116.20
82	7117.11		7117.11		7117.11
83	7315.20		7315.20		7315.20

84	8207.30		8207.30		8207.30
85	8421.22		8421.22		8421.22
86	8421.29		8421.29		8421.29
87	8473.10		8473.10		8473.10
88	9013.80		9013.80		9013.80
89	9101.91		9101.91		9101.91
90	9111.10		9111.10		9111.10
91	9111.20		9111.20		9111.20
92	9111.80		9111.80		9111.80
93	9111.90		9111.90		9111.90
94	9112.20		9112.20		9112.20
95	9112.90		9112.90		9112.90
96	9113.10		9113.10		9113.10
97	9113.20		9113.20		9113.20
98	9114.10		9114.10		9114.10
99	9114.20		9114.20	*	9114.90
100	9114.40		9114.40		9114.40
아. 싱가포르공화국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4202.19		4202.19		4202.19
2	4203.10		4203.10		4203.10
3	4203.21		4203.21		4203.21
4	5811.00		5811.00		5811.00
5	6107.12		6107.12		6107.12
6	6107.91		6107.91		6107.91

7	6107.92		6107.99		6107.99
8	6107.99		6107.99		6107.99
9	6108.21		6108.21		6108.21
				*	9619.00
10	6108.22		6108.22		6108.22
				*	9619.00
11	6108.29		6108.29		6108.29
				*	9619.00
12	6108.91		6108.91		6108.91
13	6108.92		6108.92		6108.92
14	6108.99		6108.99		6108.99
15	6115.20	*	6115.10	*	6115.10
			6115.30		6115.30
16	6115.93	*	6115.10	*	6115.10
			6115.96		6115.96
17	6117.20	*	6117.80	*	6117.80
18	6201.11		6201.11		6201.11
19	6201.12		6201.12		6201.12
20	6201.13		6201.13		6201.13
21	6201.92		6201.92		6201.92
22	6201.93		6201.93		6201.93
23	6202.12		6202.12		6202.12
24	6202.13		6202.13		6202.13
25	6202.92		6202.92		6202.92
26	6202.93		6202.93		6202.93
27	6203.21	*	6203.29	*	6203.29
28	6203.31		6203.31		6203.31
29	6203.32		6203.32		6203.32

30	6203.33		6203.33		6203.33
31	6203.49		6203.49		6203.49
32	6204.13		6204.13		6204.13
33	6204.33		6204.33		6204.33
34	6204.44		6204.44		6204.44
35	6204.53		6204.53		6204.53
36	6204.61		6204.61		6204.61
37	6205.10	*	6205.90	*	6205.90
38	6205.30		6205.30		6205.30
39	6206.10		6206.10		6206.10
40	6207.21		6207.21		6207.21
41	6211.20		6211.20		6211.20
42	6211.41		6211.41	*	6211.49
43	6211.42		6211.42		6211.42
44	6211.43		6211.43		6211.43
45	6212.10		6212.10		6212.10
46	6213.10		6213.90		6213.90
47	6213.20		6213.20		6213.20
48	6213.90		6213.90		6213.90
49	6214.20		6214.20		6214.20
50	6302.31		6302.31		6302.31
51	6302.32		6302.32		6302.32
52	6302.51		6302.51		6302.51
53	6302.53		6302.53		6302.53
54	6302.91		6302.91		6302.91
55	6303.92		6303.92		6303.92
56	6304.19		6304.19		6304.19
57	6304.92		6304.92		6304.92

58	6401.10		6401.10		6401.10
59	6401.91		6401.99		6401.99
60	6401.92		6401.92		6401.92
61	6401.99		6401.99		6401.99
62	6402.12		6402.12		6402.12
63	6402.20		6402.20		6402.20
64	6402.30	*	6402.91	*	6402.91
		*	6402.99	*	6402.99
65	6403.20		6403.20		6403.20
66	6403.30	*	6403.99	*	6403.99
67	6403.91		6403.91		6403.91
68	6404.19		6404.19		6404.19
69	6405.20		6405.20		6405.20
70	6406.10		6406.10		6406.10
71	6406.91		6406.91 목재제의 기타 신발류 부분품	*	6406.90
72	7015.10		7015.10		7015.10
73	7113.11		7113.11		7113.11
74	7116.10		7116.10		7116.10
75	7116.20		7116.20		7116.20
76	7117.11		7117.11		7117.11
77	7315.20		7315.20		7315.20
78	8215.91		8215.91		8215.91
79	8421.22		8421.22		8421.22
80	8714.99		8714.99		8714.99
81	9101.11		9101.11		9101.11
82	9101.29		9101.29		9101.29
83	9101.91		9101.91		9101.91

84	9101.99		9101.99		9101.99
85	9102.21		9102.21		9102.21
86	9102.91		9102.91		9102.91
87	9102.99		9102.99		9102.99
88	9111.10		9111.10		9111.10
89	9111.20		9111.20		9111.20
90	9111.80		9111.80		9111.80
91	9111.90		9111.90		9111.90
92	9112.20		9112.20		9112.20
93	9112.90		9112.90		9112.90
94	9113.10		9113.10		9113.10
95	9113.20		9113.20		9113.20
96	9114.10		9114.10		9114.10
97	9114.20		9114.20	*	9114.90
98	9114.30		9114.30		9114.30
99	9114.40		9114.40		9114.40
100	9502.91	*	9503.00	*	9503.00
자. 태국왕국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2923.90		2923.90		2923.90
2	4016.99		4016.99		4016.99
3	6107.91		6107.91		6107.91
4	6107.92		6107.99		6107.99
5	6107.99		6107.99		6107.99
6	6108.21		6108.21		6108.21

				*	9619.00
7	6111.20		6111.20		6111.20
				*	9619.00
8	6114.20		6114.20		6114.20
9	6115.19	*	6115.10	*	6115.10
			6115.29		6115.29
10	6201.92		6201.92		6201.92
11	6201.93		6201.93		6201.93
12	6202.12		6202.12		6202.12
13	6202.92		6202.92		6202.92
14	6202.93		6202.93		6202.93
15	6203.12		6203.12		6203.12
16	6203.21	*	6203.29	*	6203.29
17	6203.32		6203.32		6203.32
18	6204.11		6204.11		6204.11
19	6204.12		6204.12		6204.12
20	6204.13		6204.13		6204.13
21	6204.33		6204.33		6204.33
22	6204.41		6204.41		6204.41
23	6204.44		6204.44		6204.44
24	6205.10	*	6205.90	*	6205.90
25	6207.21		6207.21		6207.21
26	6211.20		6211.20		6211.20
27	6211.41		6211.41	*	6211.49
28	6211.43		6211.43		6211.43
29	6213.20		6213.20		6213.20
30	6302.32		6302.32		6302.32
31	6302.51		6302.51		6302.51

32	6302.53		6302.53		6302.53
33	6302.91		6302.91		6302.91
34	6303.91		6303.91		6303.91
35	6304.92		6304.92		6304.92
36	6402.30	*	6402.91	*	6402.91
		*	6402.99	*	6402.99
37	6403.20		6403.20		6403.20
38	6403.30	*	6403.91	*	6403.91
		*	6403.99	*	6403.99
39	6914.90		6914.90		6914.90
40	7015.10		7015.10		7015.10
41	7116.10		7116.10		7116.10
42	7315.20		7315.20		7315.20
43	7419.99	*	7419.99	*	7419.99
		*	8536.70	*	8536.70
44	8207.30		8207.30		8207.30
45	8215.91		8215.91		8215.91
46	8302.30		8302.30		8302.30
47	8413.30		8413.30		8413.30
48	8421.21		8421.21		8421.21
49	8421.23		8421.23		8421.23
50	8421.31		8421.31		8421.31
51	8424.90		8424.90		8424.90
		*	8486.90	*	8486.90
52	8473.10		8473.10		8473.10
53	8480.71		8480.71		8480.71
		*	8486.40	*	8486.40
54	8504.90		8504.90		8504.90

55	8512.20		8512.20		8512.20
56	8512.90		8512.90		8512.90
57	8517.90	*	8443.99	*	8443.99
		*	8517.70	*	8517.70
58	8534.00		8534.00		8534.00
59	8536.30		8536.30		8536.30
60	8536.50		8536.50		8536.50
61	8536.69		8536.69		8536.69
62	8536.90		8536.90		8536.90
63	8538.90		8538.90		8538.90
64	8540.91		8540.91		8540.91
65	8543.89	*	8486.10	*	8486.10
		*	8486.20	*	8486.20
		*	8486.30	*	8486.30
		*	8486.40	*	8486.40
		*	8523.52	*	8523.52
		*	8543.70	*	8543.70
66	8714.99		8714.99		8714.99
67	9013.80		9013.80		9013.80
68	9101.11		9101.11		9101.11
69	9101.12		9101.19		9101.19
70	9101.19		9101.19		9101.19
71	9101.21		9101.21		9101.21
72	9101.29		9101.29		9101.29
73	9101.91		9101.91		9101.91
74	9101.99		9101.99		9101.99
75	9102.11		9102.11		9102.11
76	9102.12		9102.12		9102.12

77	9102.19		9102.19		9102.19
78	9102.21		9102.21		9102.21
79	9102.29		9102.29		9102.29
80	9102.91		9102.91		9102.91
81	9102.99		9102.99		9102.99
82	9111.10		9111.10		9111.10
83	9111.20		9111.20		9111.20
84	9111.80		9111.80		9111.80
85	9111.90		9111.90		9111.90
86	9112.90		9112.90		9112.90
87	9113.10		9113.10		9113.10
88	9113.20		9113.20		9113.20
89	9113.90		9113.90		9113.90
90	9114.10		9114.10		9114.10
91	9114.20		9114.20	*	9114.90
92	9114.30		9114.30		9114.30
93	9114.40		9114.40		9114.40
94	9114.90		9114.90		9114.90
95	9404.90		9404.90		9404.90
96	9502.10	*	9503.00	*	9503.00
97	9502.91				
98	9503.41				
99	9503.49				
100	9503.90				
차.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2923.90		2923.90		2923.90
2	4202.12		4202.12		4202.12
3	4202.19		4202.19		4202.19
4	4202.91		4202.91		4202.91
5	4202.92		4202.92		4202.92
6	4202.99		4202.99		4202.99
7	4203.21		4203.21		4203.21
8	6107.19		6107.19		6107.19
9	6107.99		6107.99		6107.99
10	6108.99		6108.99		6108.99
11	6117.20	*	6117.80	*	6117.80
12	6203.21	*	6203.29	*	6203.29
13	6205.10	*	6205.90	*	6205.90
14	6211.20		6211.20		6211.20
15	6211.41		6211.41	*	6211.49
16	6211.42		6211.42		6211.42
17	6212.10		6212.10		6212.10
18	6212.20		6212.20		6212.20
19	6212.90		6212.90		6212.90
20	6213.10		6213.90		6213.90
21	6213.20		6213.20		6213.20
22	6213.90		6213.90		6213.90
23	6214.10		6214.10		6214.10
24	6214.20		6214.20		6214.20
25	6214.30		6214.30		6214.30
26	6214.90		6214.90		6214.90
27	6302.51		6302.51		6302.51

28	6302.53		6302.53		6302.53
29	6302.91		6302.91		6302.91
30	6302.93		6302.93		6302.93
31	6303.91		6303.91		6303.91
32	6303.92		6303.92		6303.92
33	6304.19		6304.19		6304.19
34	6304.92		6304.92		6304.92
35	6401.10		6401.10		6401.10
36	6401.91		6401.99		6401.99
37	6401.92		6401.92		6401.92
38	6401.99		6401.99		6401.99
39	6402.12		6402.12		6402.12
40	6402.19		6402.19		6402.19
41	6402.30		6402.91		6402.91
			6402.99		6402.99
42	6402.91		6402.91		6402.91
43	6402.99		6402.99		6402.99
44	6403.12		6403.12		6403.12
45	6403.19		6403.19		6403.19
46	6403.30		6403.91		6403.91
			6403.99		6403.99
47	6403.40		6403.40		6403.40
48	6403.51		6403.51		6403.51
49	6403.59		6403.59		6403.59
50	6403.91		6403.91		6403.91
51	6403.99		6403.99		6403.99
52	6404.11		6404.11		6404.11
53	6404.19		6404.19		6404.19

54	6404.20		6404.20		6404.20
55	6405.10		6405.10		6405.10
56	6405.20		6405.20		6405.20
57	6405.90		6405.90		6405.90
58	6406.10		6406.10		6406.10
59	6406.20		6406.20		6406.20
60	6406.91		6406.91	*	6406.90
61	6406.99		6406.99	*	6406.90
62	7015.10		7015.10		7015.10
63	7113.11		7113.11		7113.11
64	7113.19		7113.19		7113.19
65	7113.20		7113.20		7113.20
66	7116.10		7116.10		7116.10
67	7116.20		7116.20		7116.20
68	7117.11		7117.11		7117.11
69	7117.19		7117.19		7117.19
70	7117.90		7117.90		7117.90
71	8473.10		8473.10		8473.10
72	9013.80		9013.80		9013.80
73	9101.12		9101.19		9101.19
74	9101.19		9101.19		9101.19
75	9101.21		9101.21		9101.21
76	9101.29		9101.29		9101.29
77	9101.99		9101.99		9101.99
78	9102.11		9102.11		9102.11
79	9102.12		9102.12		9102.12
80	9102.91		9102.91		9102.91
81	9102.99		9102.99		9102.99

82	9111.10		9111.10		9111.10
83	9111.20		9111.20		9111.20
84	9111.80		9111.80		9111.80
85	9111.90		9111.90		9111.90
86	9112.90		9112.90		9112.90
87	9113.10		9113.10		9113.10
88	9113.20		9113.20		9113.20
89	9113.90		9113.90		9113.90
90	9114.10		9114.10		9114.10
91	9114.20		9114.20	*	9114.90
92	9114.30		9114.30		9114.30
93	9114.40		9114.40		9114.40
94	9114.90		9114.90		9114.90
95	9404.90		9404.90		9404.90
96	9502.10	*	9503.00	*	9503.00
97	9502.91				
98	9503.41				
99	9503.49				
100	9503.90				

비고

1.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품목번호란에 "*"가 표시된 품목은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란에 표시된 품명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품목번호란에 "*"가 표시된 품목은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란에 표시된 품명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6. 0. 0.>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

법 제7조제1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3.1조가호 및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베트남(이하 이 표에서 "체약 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1)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2)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물품
3)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및 식물성 물품
4) 체약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으로 획득되거나, 내수 및 영해 내에서 어로 또는 양식으로 획득된 물품
5) 체약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6) 체약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체약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체약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획물과 그 밖의 해양생물 그리고 체약 당사국 또는 체약 당사국의 인(人)(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의하여 획득된 그 밖의 물품. 다만, 그 체약 당사국이 국제법상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체약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체약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6)에 규정된 물품만으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물품
8) 체약 당사국 또는 체약 당사국의 인(人)에 의하여 우주에서 획득된 물품
9)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복구 또는 수리도 할 수 없는 물품(폐품, 원재료 회수용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중고품(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

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11)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목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전적으로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과 베트남과의 협정 제3.1조나호 및 제3.4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3호와 같다.

2) 베트남과의 협정 제3.1조다호에 따라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체약 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나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의 협정 부속서 3-나 제7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1), 2) 및 이 표의 다른 적용 가능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체약 당사국에서 수출된 후 한반도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가공 또는 공정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 당사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베트남과의 협정 제3.5조 및 부속서 3-나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그 물품이 다시 수입된 체약 당사국에서 수출을 위하여 라목에 규정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을 것

3)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나) 체약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및 그 밖에 발생한 모든 비용(운송비용을 포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2)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
3) 단순한 세척, 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4)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5)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 공정
6)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7) 설탕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8) 단순한 탈피(脫皮), 씨 제거 및 탈각(제0801.3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9)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10) 감별(sifting), 체질(screening), 선별(sorting), 분류, 등급화(grading) 또는 매칭(matching)
11)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작업
12)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표시의 부착 또는 인쇄
13)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한 혼합. 다만,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 내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인 “화학 반응(chemical reaction)”은 제외한다.
14)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물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15)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16) 동물의 도축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어느 하나의 체약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 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3호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 제3장의 적용 가능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집적법

$$\text{역내부가가치 비율} = \frac{\text{원산지재료의 가격}}{\text{본선인도가격}} \times 100$$

나) 공제법

$$\text{역내부가가치 비율} = \frac{\text{본선인도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text{본선인도가격}} \times 100$$

2) 1)의 계산식에서 “본선인도가격”이란 해외로의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가격은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이 표에서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의 결정방식을 따른다.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격은 라목에 따라 결정한다.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1) 다목의 “원산지재료의 가격”은 다음의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가) 원산지재료비용: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자가생산한 원산지재료, 부품 또는 물품의 가치

나) 노무비: 임금, 보수 및 기타 피고용인 수당

다) 간접비

라) 기타 비용: 수출을 위하여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운송비용, 보관 및 창고, 항만, 중개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포함한다.

2) 다목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관세평가협정 결정방식에 따라 평가된 해당 재료의 수입시점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CIF 가격)

나)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의 경우, 해당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불된 확인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의 가격

마. 중간재의 원산지 결정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거나 비원산지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다른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하 이 표에서 "중간재"라 한다)이 원산지물품인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바.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료(이하 이 목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1) 연료 및 에너지

2) 도구・형판 및 주형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4)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5)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 및 보급품

6)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7) 물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물품

사.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물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는 데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표에서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1) 또는 2)에 따라 선택된 재고물품관리법은 그 방법을 선택한 인(人)의 회계연도 동안 해당 물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재고물품관리법이 체약 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경우에는 그 체약 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 부분품, 공구, 사용설명서 및 기타 안내서(이하 이 표에서 "부속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부속품등이 가격 및 수량으로 보아 그 물품의 통상적인 부속품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그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다목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포장 및 포장재의 원산지를 고려한다.

2) 다목의 부가가치기준을 제외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 및 포장재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차. 운송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운송 도중 물품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 및 용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이 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의 원칙을 기초로 적용한다.

가. 이 호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한다.

나.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그 기준이 류(類), 호(號) 또는 소호(小號) 단위에서 특정 품목번호 또는 특정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품목번호 또는 물품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여야 한다.

다. 이 호의 품목번호는 2022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HS 코드(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류	호	소호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01			완전생산기준

02			완전생산기준
03			완전생산기준
04			
	04.01		완전생산기준
	04.02		
		0402.1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2.2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2.2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2.9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2.99	6단위 세번변경기준
	04.03		
		0403.20	가. 향신료·커피나 커피 추출물·식물·식물의 부분·곡물이나 베이커리 제품이 첨가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403호의 물품은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성분이 총 우유성분 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403호의 물품은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성분이 총 우유성분 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4		완전생산기준
	04.05		완전생산기준
	04.06		
		0406.10	완전생산기준
		0406.20	완전생산기준
		0406.3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406.30호의 물품은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성분이 총 우유성분 중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6.40	완전생산기준
		0406.90	완전생산기준
	04.07		완전생산기준
	04.08		완전생산기준
	04.09	0409.00	완전생산기준
	04.10		완전생산기준
05			완전생산기준
제2부 식물성 생산품			
06			완전생산기준
07			완전생산기준
08			
	08.01		
		0801.11	완전생산기준
		0801.12	완전생산기준

		0801.19	완전생산기준
		0801.21	완전생산기준
		0801.22	완전생산기준
		0801.31	완전생산기준
		0801.32	6단위 세번변경기준
	08.02		
		0802.11	완전생산기준
		0802.12	6단위 세번변경기준
		0802.21	완전생산기준
		0802.22	완전생산기준
		0802.31	완전생산기준
		0802.32	완전생산기준
		0802.41	완전생산기준
		0802.42	완전생산기준
		0802.51	완전생산기준
		0802.52	완전생산기준
		0802.61	완전생산기준
		0802.62	완전생산기준
		0802.70	완전생산기준
		0802.80	완전생산기준
		0802.91	완전생산기준
		0802.92	완전생산기준
		0802.99	완전생산기준
	08.03		완전생산기준

	08.04		완전생산기준
	08.05		완전생산기준
	08.06		완전생산기준
	08.07		완전생산기준
	08.08		완전생산기준
	08.09		완전생산기준
	08.10		완전생산기준
	08.11		완전생산기준
	08.12		완전생산기준
	08.13		완전생산기준
	08.14	0814.00	완전생산기준
09			
	09.01		
		0901.11	완전생산기준
		0901.12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901.21	6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22	6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90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09.02		완전생산기준
	09.03	0903.00	완전생산기준
	09.04		
		0904.11	완전생산기준
		0904.12	2단위 세번변경기준
		0904.21	완전생산기준
		0904.22	완전생산기준
	09.05		완전생산기준
	09.06		
		0906.11	완전생산기준

		0906.19	완전생산기준
		0906.20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09.07		완전생산기준
	09.08		완전생산기준
	09.09		완전생산기준
	09.10		
		0910.11	완전생산기준
		0910.12	완전생산기준
		0910.20	완전생산기준
		0910.30	완전생산기준
		0910.9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0910.99	가. 타임, 월계수잎: 완전생산기준 나. 기타: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0			완전생산기준
11			
	11.01	1101.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11.02		
		1102.20	완전생산기준
		1102.90	가. 쌀가루, 호밀가루: 완전생산기준 나.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1.03		

		1103.1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3.1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3.19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103.20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1.04		
		1104.1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4.19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104.22	완전생산기준
		1104.23	완전생산기준
		1104.29	완전생산기준

		1104.30	완전생산기준
	11.05		
		1105.1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5.20	완전생산기준
	11.06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7		
		1107.10	2단위 세번변경기준
		1107.20	완전생산기준
	11.08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9	1109.00	완전생산기준
12			
	12.01		완전생산기준
	12.02		완전생산기준
	12.03	1203.00	완전생산기준
	12.04	1204.00	완전생산기준
	12.05		완전생산기준
	12.06	1206.00	완전생산기준
	12.07		완전생산기준
	12.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2.09		완전생산기준
	12.10		완전생산기준
	12.11		완전생산기준
	12.12		완전생산기준
	12.13	1213.00	완전생산기준

	12.14		완전생산기준
13			
	13.01		완전생산기준
	13.02		
		1302.11	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2	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3	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4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1302.19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1302.20	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1	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2	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9	2단위 세번변경기준
14			
	14.01		완전생산기준
	14.04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15			
	15.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3	150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4		
		1504.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4.2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4.3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5	1505.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6	1506.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6		
		1516.1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6.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6.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7		
		1517.10	2단위 세번변경기준
		1517.9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8	1518.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15.20	1520.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21		
		1521.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21.9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22	1522.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16			
	16.01	1601.00	가. 곤충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		
		1602.10	가. 곤충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2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류,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602.31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류,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602.32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3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2.4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2.42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류,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602.4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2.5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2.90	가. 곤충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3	1603.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4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5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			
	17.01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
	17.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3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409호 및 제1702호의 것은 제외한다)
	17.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			

	19.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3	190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4		
		1904.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4.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4.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9.05		
		1905.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3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3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4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9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			
	20.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6	2006.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		
		2008.11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8.19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8.20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8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008.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4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5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6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7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8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9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9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97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9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2.21호 및 제1212.29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0.09		
		2009.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3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3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41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9.49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9.5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6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6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7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7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8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8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9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			
	21.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4		
		2104.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2104.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212.29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1.05	2105.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6		
		2106.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인삼제품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2			
	22.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2		
		2202.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2.91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202.99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2.03	2203.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		
		2204.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2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2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2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6	2206.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		
		2208.2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3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4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5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6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7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9	2209.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			
	23.01		
		2301.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1.20	2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4	2304.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5	2305.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		
		2306.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4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4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50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8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306.6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7	2307.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8	2308.00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8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8류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3.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			
	24.01		완전생산기준
	24.02		
		2402.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2.2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24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40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4		
		2404.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4.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4.19	A. 전자담배용 용액: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B.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4.9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212.29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404.9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4.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5부 광물성 생산품			
25			
	25.01	2501.00	완전생산기준
	25.02	2502.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3	250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7	2507.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9	2509.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2	2512.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4	2514.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1	2521.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8	2528.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			
	27.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3	270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4	2704.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5	2705.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6	2706.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9	2709.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0		
		2710.12	6단위 세번변경기준
		2710.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0.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0.9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0.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5	2715.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6	2716.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2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			
	29.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1	2911.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3	291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		
		2921.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2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2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2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5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5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		
		2922.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5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3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3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4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4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4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4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4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5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3		
		2923.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3.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3.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3.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3.9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7	2927.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8	2928.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40	2940.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4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42	2942.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			
	33.01		
		3301.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2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2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33.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3	330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3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4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50			
	50.01	5001.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2	5002.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3	5003.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4	5004.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5	5005.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6	5006.0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004호 및 제5005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			
	51.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4	5104.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5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9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10	5110.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13	511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			
	52.01	5201.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3	5203.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7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204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			
	53.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5	5305.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11	5311.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한 것,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			
	54.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4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5	5405.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6	5406.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			
	55.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4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5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6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7	5507.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1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8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			
	58.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3	5803.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4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5	5805.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6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7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8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9	5809.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11	5811.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			
	63.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4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5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6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7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8	6308.0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9	6309.00	완전생산기준
	63.10		완전생산기준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6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			
	71.01		
		7101.10	완전생산기준
		7101.21	완전생산기준
		7101.2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3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4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5		
		7105.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5.9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7	7107.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9	7109.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1	7111.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3		
		7113.1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3.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3.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4		
		7114.1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4.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4.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5		
		7115.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5.9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6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7		
		7117.1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7.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7.9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72			
	72.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		
		7219.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2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2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2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3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3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33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34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35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9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0		
		7220.11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0.12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0.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1	7221.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3	722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			
	74.01	7401.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2	7402.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4	7404.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5	7405.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8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407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3	741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408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			
	75.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3	750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4	7504.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7		
		7507.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7.1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7.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8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			
	76.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2	7602.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5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9	7609.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1	7611.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3	761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4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605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			
	81.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		
		8104.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9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1	8111.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3	811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4			
	84.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0		
		8410.11	6단위 세번변경기준(제8410.12호 및 제8410.13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0.12	6단위 세번변경기준(제8410.11호 및 제8410.13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0.13	6단위 세번변경기준(제8410.11호 및 제8410.12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		
		8413.1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1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5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6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7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8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8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9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9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		
		8414.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5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5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6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7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8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5		
		8415.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5.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5.8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5.8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5.83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7		
		8417.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7.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7.8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7.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		
		8418.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2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2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5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6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6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9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		
		8419.1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1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1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33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34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35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3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5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6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8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8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0		
		8420.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0.9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0.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		
		8421.1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1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1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2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2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23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2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3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3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3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9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2		
		8422.1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2.1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2.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2.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2.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3		
		8423.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3.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3.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3.8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3.8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3.8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		
		8424.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4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4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8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8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		
		8432.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2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2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3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3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4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4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8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		
		8433.1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1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5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5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53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5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6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6		
		8436.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6.2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6.2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6.8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6.9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6.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7		
		8437.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7.8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7.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		
		8438.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5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6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8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		
		8443.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1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1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1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3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3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3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9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4	8444.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9	8449.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0		
		8450.1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0.1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0.1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0.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		
		8451.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2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2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5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8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2		
		8452.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2.2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2.2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2.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4		
		8454.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4.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4.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		
		8467.1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1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2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2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2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8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8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9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9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		
		8479.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5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6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7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7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8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8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83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8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		
		8482.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5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8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9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5		
		8485.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5.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5.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5.8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		
		8486.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			
	85.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3	850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		
		8504.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2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2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23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3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3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33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34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5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6		
		8506.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6.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6.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6.5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6.6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6.8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		
		8507.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5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6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8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8		
		8508.1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8.1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8.6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8.7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1		
		8511.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1.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1.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1.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1.5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1.8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		
		8516.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2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2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3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3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33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5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6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7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7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7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8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		
		8517.1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13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14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18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6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6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6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7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7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		
		8518.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2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2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2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5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4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1		
		8531.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1.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1.8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		
		8532.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2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2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2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2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4	8534.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		
		8536.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4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4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5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6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6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7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		
		8539.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2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2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2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3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3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3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4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4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5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5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		
		8540.1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1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6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7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7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8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8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9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		
		8541.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2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2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4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4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43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4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5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5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6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2		
		8542.3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2.3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2.33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2.3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3		
		8543.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3.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3.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3.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3.7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8	8548.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8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			
	87.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2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		
		8703.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3.21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22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23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24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31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32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33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40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50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60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70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80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90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4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6	8706.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		
		8708.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2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2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40	가. 기어박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50	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및 비구동 차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7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8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91	가. 방열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92	가. 소음기(머플러) 및 배기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9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94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9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0	8710.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2	8712.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5	8715.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			
	89.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2	8902.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4	8904.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7		
		8907.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8907.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8	8908.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20부 잡품			
94			
	94.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		
		9403.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9403.4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9403.5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9403.6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9403.7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8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83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8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9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			
	95.03	9503.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4		
		9504.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4.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4.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4.5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			
	96.0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2	9602.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

			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4	9604.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5	9605.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		
		9608.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4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5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6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9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9		
		9609.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9.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9.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0	9610.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1	9611.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3		
		9613.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3.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3.8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4	9614.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7	9617.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8	9618.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9	9619.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20	9620.0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9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 ④ (생 략) ⑤ 삭 제 ⑥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⑦ ~ ⑮ (생 략)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⑥ ----------. 1. ~ 4. (현행과 같음) 5. WiseTech Global Pty Ltd ⑦ ~ ⑮ (현행과 같음)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 ⑤ (생 략)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신 설>	1.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자
<신 설>	2.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신 설>	3.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있는 자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사전심사) ①·② (생 략)	제31조(사전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신청 물품당 3만원을 말한다.	③ ---------- 사전심사를 위하여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당 ----------.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